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19다235283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19다23528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4. 5 선고 2018나2032133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5. 29 선고 2016가합77465 판결

전문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서

담당변호사 김남성, 이연이, 도명옥

피고, 피상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인호

판결선고 2021. 7. 21.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4. 5. 선고 2018나203213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부담한다.

N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2차 신탁변경계약을 사해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이 부동산담보신탁과 처분신탁, 우선수익권과 우선변제적 효력, 계약의 해석 및 사해성과 사해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누락, 이유모순 및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으로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동원, 주 심 대법관 조재연,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천대엽

별지